

제2673호
2019. 8. 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96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2

● 공 고

제2019-58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 공고 4

제2019-58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 96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2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아래 열람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372-94 외 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41	2019.08.07.	동호로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묵정동 25-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0길 33-6	2019.08.07.	퇴계로5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신당동 372-94 외 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41	2019.08.07.	건물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8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내용

- 공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람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일 : 2014. 3. 27.

- 해제대상 정비구역(안)

구역명	세부구역수	면 적(㎡)	구역명	세부구역수	면 적(㎡)
3구역	2	8,292.50	6-2구역	47	57,407.10
5구역	9	31,711.50	6-3구역	5	2,293.2
6-1구역	32	44,390.20	6-4구역	22	28,400.80

※ 2019. 3. 26.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된 구역 제외

- 공람기간 : 2019. 8. 7. ~ 2019. 9. 6.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재생과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2. 본 안은 주민공람, 구의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심재생과 (☎ 3396-5753~575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〇-〇-〇구역 공람 의견서

구역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〇-〇-〇구역			
대상 물건지	건물			
	토지			
의견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의견 (택일하여 동그라미에 √ 표시) ① 구역 해제 의견 ② 구역 연장 의견				
○ 기타 의견 (자유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8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사항에 맞추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도시공원 내 구민 이용 제한, 난개발 노출 등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안 부칙 제1조)

2019.12.31.로 만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안 제2조)

-2018.12.31.로 만료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으로 감면 적용시한이 2018.12.31.에서 2020.12.3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감면 적용시한도 연장.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함 (안 부칙 제3조)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9조의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5, FAX : 02-3396-8695, E-mail : kiti7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 ·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2016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50.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